

# 남한에서의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 전승과 보존에 관한 제도 분석 연구

최희아\*

- |                          |                     |
|--------------------------|---------------------|
| I. 서론                    | V.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독립제도 |
| II.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 현황     | VI. 결론 및 논의         |
| III.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 지정배경  | 참고문헌                |
| IV.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의 전승제도 | Abstract            |

## I. 서론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가 남한에서 전승되어진 것은 북한의 기·예능인들이 월남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북한의 1948년 정권 수립 이후와 6·25 전쟁을 겪으며, 북한의 기·예능인들이 남한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문화를 향유하고 전승해온 것이다. 북한의 문화유산은 1967년도에 남한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처음 지정되면서 사라져갈 위기에 놓인 북한 지역의 무형문화재를 보전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하나의 범주로 구분해 놓지는 않았지만 국가무형문화재로 8종목, 시·도무형문화재는 3종목, 이북5도무형문화재 19종목이 제도 안에서 보호조치를 받고 있다.<sup>1)</sup> 이는 북한 지역기반 문화재가 역사성과 학술성의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무형 문화재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제도적 체제 아래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이북5도무형문화재로서 전승과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독립적인 제도가 이루어진 1998년 이전까지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는 다른 무형문화재와 마찬가지로 같은 제도 아래서 보호와 전승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1998년 5월1일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이 제정되면서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구분을 하고 독립적 제도가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상태라 여전히 문화재 지정 및 지원대책의 미흡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시대에 걸쳐 제도의 변화과정이 이루어졌지만 전승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종목에는 소멸위기, 전승 단절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이북5도 위원회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현

\*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 박사수료, heeah33@naver.com

1)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2021), 『문화유산』, <http://www.heritage.go.kr/, 2021. 3. 12.>.

황과 특성에 맞는 이북5도 무형문화재만의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이 2021년 2월 18일에 개정되었지만, 구체적인 전승활동의 지원과 전승제도에 관한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 개정변화에 아쉬움이 있다.

북한 지역기반 무형유산은 분단으로 인해 지역기반이 상실되었지만 역사적 가치에 의의를 두어 더욱 보호해야 한다. 특히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는 남북교류의 매개체이며 훗날 씨름과 같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공동 등재시킬 수 있는 문화재가 될 수 있기에 적극적인 제도 지원의 절실함이 요구된다. 북한의 무형유산의 지정주체, 전승체계, 현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지만 아쉽게도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았다.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 제도에 관한 연구는 이북5도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반적인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 연구제기를 바탕으로 현황과 실태에 관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에 해당되는 연구제기는 아래와 같다.

첫째,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는 어떠한 배경으로 남한에서 문화재 지정을 받으며 대한민국정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인가?

둘째,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는 국가, 시·도,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보호받고 있는데, 지정하는 주체에 따라서 보존 및 관리체제는 어떻게 다른가?

셋째, 1988년 8월 1일「황해도평산소놀이굿」이 북한문화유산의 마지막 국가무형문화재로서 지정되어 문화재 보호정책을 받고 있는데,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가 왜 더 이상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가?

넷째,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섯째,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의 통합적 제도마련이 필요한가?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를 시대별로 살펴보고 지역적 한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존 및 전승 체제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 시·도, 이북5도의 지정주체에 따라 어떻게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고 계승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실질적인 제도인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등을 살펴보고 신문기사, 토론회, 학술조사, 인터뷰<sup>2)</sup> 등의 자료를 토대로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의 제도에 대해 실재적 측면을 파악하고자 한다. 문화재 관련 제도의 실재적 측면을 분석하는 일은 제도 수립과 시행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제도의 변화가 상황에 맞게 대처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상고하는데 필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를 보호하는 제도에 있어 차후 체계적 계승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담론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참여에 동의를 얻은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인터뷰.

## II.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 현황

문화재청에서 발행한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2020』을 살펴보면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수는 총 5,028건이며 이중 국가무형문화재는 149건이다.<sup>3)</sup> 시·도지정·등록문화재는 총 6,617건이며 시·도무형문화재는 총 560건이다.<sup>4)</sup> 이중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는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8종목(5.37%),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3종목(0.54%), 이북5도 지정 무형문화재 19종목이 있다.

국가 지정문화재는 국보, 보물, 국가무형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그 중 국가무형문화재는 세대 간을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전통 공연·예술, 전통지식, 전통기술, 구전 전통 및 표현, 전통 생활관습, 의례·의식, 전통 놀이·무예 7가지로 구분된다. 이에 국가지정 문화재 중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는 8종목이 있다.<sup>5)</sup>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는 1967년 3월 31일에 「북청사자놀음」 지정을 필두로 1988년 8월 1일에 「황해도평산소놀음굿」이 마지막 북한 지역기반 국가무형문화재로서 지정되어 문화재 보호정책을 받고 있다.

시·도 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시·도 무형문화재는 시·도 조례에 의해 지정된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국가무형문화재와 동일하게 7가지의 범주로 구분된다. 양종승 견해에 의하면 시·도 문화재로 지정된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는 인천광역시에 3종목이 있다.<sup>6)</sup> 1988년 12월 24일에 지정된 「인천근해 갯가노래 뱃노래」를 필두로 2013년 4월 30일 「꽃맞이굿」과 「지화장」이 같은 날 지정되었다. 「인천근해 갯가노래 뱃노래」에서 갯가노래에 해당되는 나나니와 굽음이 황해도 노동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며, 갯가노래의 창시자인 차영녀는 이북출신으로 후대에 전승체제가 이어지고 있다.<sup>7)</sup> 「자화장」의 보유자인 김은옥은 이북출신으로 4대째 보존을 이어나가고 있다.<sup>8)</sup>

이북5도 무형문화재는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로 구분되어 지정된 무형문화재를 말한다. 문화재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이북5도 무형문화재는 2021년 3월 기준으로 19개가 지정되었다.<sup>9)</sup> 황해도 7개, 평안남도 4개, 평안북도 3개, 함경남도 2개, 함경북도 3개가 지정되었다.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지정 범주도 국가무형문화재와 동일하게 7종목으로 구분되어있지만 전통공연·예술 12종목과 의례·의식 5종목, 전통놀이·무예 2종목에 지정이 집중되어있다.

위와 같이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는 지정하는 주체에 따라 국가, 시·도, 이북5도로 구분되어 보호 받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정보를 참고하여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0)</sup>

3) 문화재청(202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20』(문화재청), p.10.

4) 앞의 글(2021), p.11.

5) 문화재청(2021), 『국가무형문화재 현황』,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78921&bbsId=BBSMSTR\\_1045&mn=NS\\_03\\_09\\_01/](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78921&bbsId=BBSMSTR_1045&mn=NS_03_09_01/), 2021. 3. 12.>.

6) 양종승, 한덕택(2015), 문화재보호법과 이북5도 무형문화재, 『한국전통공연예술학회』4, p.87.

7) 갯가노래 사무장겸 이수자인 김미나선생님과 전화인터뷰(2021. 2. 7.).

8) 지화장 보유자인 김은옥선생님과 전화인터뷰(2021. 2. 7.).

지화장은 가화, 무화가 전승되고 있는데 가화는 대가집에서 화공에게 만들어진 꽃으로 가정의 꽃이며, 무화는 무속이 꽃을 의미한다.

9)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2021), 『우리지역문화재』,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RegionView.do?pageNo=1\\_13\\_1/](http://www.heritage.go.kr/heri/cul/culRegionView.do?pageNo=1_13_1/), 2021. 3. 12.>.

10) 문화재청(2021), 『문화재정보』, <<http://search.cha.go.kr/>, 2021. 3. 12.>.

문화재청에서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는 북한 지역에서 파생하여 남한에서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받고 있는 무형유산을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로 구분하고 현황을 살펴보았다.

〈표 1〉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 현황-국가무형문화재

소재지	종목	명칭	분야	지정(등록)일
서울	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전통공연·예술	1967.03.31.
서울	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전통공연·예술	1967.06.16.
기타	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전통공연·예술	1969.09.27.
서울	국가무형문화재 제34호	강령탈춤	전통공연·예술	1970.07.22
인천	국가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	전통공연·예술	1978.02.23.
인천	국가무형문화재 제82호-2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의례·의식	1985.02.01.
경기	국가무형문화재 제86-1호	문배주	전통생활관습	1986.11.01.
인천	국가무형문화재 제90호	황해도평산소놀음굿	의례·의식	1988.08.01.

〈표 2〉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 현황-시·도무형문화재

소재지	종목	명칭	분야	지정(등록)일
인천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3호	인천근해 갯가노래 뱃노래 (서해안 뱃노래 및 갯가노래)	전통공연· 예술	1988.12.24.
인천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24호	꽃맞이굿(황해도굿)	의례·의식	2013.4.30.
인천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25호	지화장(황해도지화)	전통기술(공예)	2013.4.30.

〈표 3〉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 현황-이북5도무형문화재

소재지	종목	명칭	분야	지정(등록)일
황해도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제1호	만구대탁굿	의례·의식	2005.11.10.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제2호	서도소리 '산염불·난봉기'	전통공연·예술	2009.08.26.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제3호	서도선소리산타령'놀량사거리'	전통공연·예술	2009.08.26.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제4호	화관무	전통공연·예술	2011.08.01.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제5호	최영장군 당굿	의례·의식	2011.08.01.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제6호	황해도 대동굿	의례·의식	2018.08.06.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제7호	황해도 배뱅이굿	전통공연·예술	2018.12.11.
평안남도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제1호	평양검무	전통공연·예술	2001.02.23.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제2호	평안도 향두계놀이	전통놀이·무예	2009.08.18.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제3호	김백봉 부채춤	전통공연·예술	2014.10.15.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제4호	평남 수건춤	전통공연·예술	2018.04.30
평안북도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제2호	영변성황대제	의례·의식	2007.10.05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제3호	평안도 다리굿	의례·의식	2007.10.05.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제4호	평북농요	전통공연·예술	2016.04.11
함경남도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제1호	돈돌놀이	전통놀이·무예	1998.11.02.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제2호	통소 신아우	전통공연·예술	2017.08.30.

### III.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 지정배경

#### 1.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최소수준의 문화 활동 지원

1960년대 이전은 사라져갈 전통문화의 위기의식은 갖고 있었지만 정부는 국가의 주요사업으로서 발전시키기 보다는 국가 재건사업에 부차적인 것으로서<sup>11)</sup> 문화관련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960년 이전은 문화정책의 빈곤기<sup>12)</sup>, 국가 문화기반 형성기<sup>13)</sup>로 보는 학자들이 있다. 이는 국가재건 사업, 경제발전 등의 목표로 문화재 등 문화관련 제도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 저조하였기 때문이다. 일제 치하에서 잊어버린 세월을 되찾겠다는 목표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최소한이면서 필수적이었던 부분만이 수행되고 있었다.<sup>14)</sup> 문화재에 관한 중점적인 보호조치의 제도가 아닌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에 치중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차적인 요소로 최소 수준의 사업이 실행되었던 것이다.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적 수단으로<sup>15)</sup> 문화재를 지원하고 육성하였던 것이다. 이에 무형문화재 보호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였고 북한지역기반 무형문화재도 어떠한 보호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못하였다.

#### 2. 무형문화재의 제도 보호의 필요성 인식

예용해의 『인간문화재』를 살펴보면 1960년대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를 포함하여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존 및 계승에 어려움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용해는 1960년부터 1962년까지 한국일보 기획연재에 실렸던 『인간문화재』를 통하여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 개념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전파하였고, 전통 문화의 맥을 보존하고 문화재 보호에 중요한 인식의 전환점을 갖게 해주었다.<sup>16)</sup> 그는 무형문화재를 전파하고 계승하고 있는 인간문화재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으며 재정 지원 및 보호조치가 없는 제도에 대한 아쉬움을 칼럼을 통해 작성하였다. 여기에 북한지역기반 무형문화재의 「북청사자놀이», 「봉산탈춤」의 전승자를 찾아가 조사하고 수록하였다.

김웅(김진옥)은 500여 년을 즐기치게 내려오던 탈춤이 그를 마지막으로 하여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몇 해 전 봉산군민회의 후원을 얻어 장충공원에서 열린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봉산탈춤이 일등을 차지한 후, 국립국악원 주최의 탈춤강습회 10여일 가진 외 보존활동을 못하고 있다. 어디 장소를 빌려 탈춤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공짜로 가르쳐주어 탈춤놀이의 명맥을 잡아두자는 삼산인 것이다.

1960년 11월 3일<sup>17)</sup>

11) 김수정(2018), 문화사회학적 시각으로 바라본 한국 문화정책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30.

12) 박혜자(2011), 『문화정책과 행정』(서울: 대영문화사), pp.237-239.

13) 박광무(2013), 『한국문화정책론:21세기 최강대국의 가장 강력한 아이콘』(파주: 김영사), pp.59-60.

14) 김수정(2018), p.134.

15) 정수진(2003), 한국 무형문화재 제도의 성립: 그 사회적 조건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12.

16) 예용해(2011), 『예용해전집』(서울: 대원사), pp.4-425.

17) 앞의 책, pp.114-115.

북청사자무를 하는 윤영춘씨를 물으며 아는 이가 없다. 윤씨대에 정들었던 낯선 이향에서 떠돌아다니며 내일 없는 삶에 허덕이어야만 하니...생략...수년 전 장충단공원에서 있었던 [민속무용경연대회] 때 개인상도 탔으나, 그것도 무심한 어린것들이 보채는 시장기를 가실 아무런 보탬이 될 수 없었다. 먹고 살고 보아야겠다는 일념에 동으로 서로 헤매고 있을 뿐이다.

1960년 12월 20일<sup>18)</sup>



〈그림 1〉 무형문화재 육성의 향연<sup>19)</sup>

예용해가 저술한 글을 살펴보면 월남을 하고 난 후 실향민들은 1960년 이전부터 1960년도 초기까지만 해도 무형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승과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계에 시달리는 상황에 전승에 대한 막연함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문교부에서 무형문화재에 관한 보호 대책이 없으며 지역 도민회나 군민회조차도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계승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놓여져 있었다. 이에 예용해의 『인간문화재』 발간은 무형문화재의 보호대책이 없어 계승의 맥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 전승자의 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었다.

1962년 8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를 살펴보면 무형문화재는 방임상태로 고유의 민족정서가 사멸의기에 놓여있어서 정부에서 문화계의 비평가, 전문가들의 여론을 살펴 민속예술경연대회를 마련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 가면무극, 봉산탈춤, 강강수월래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양상으로 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렇듯 1960년 이전은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전통문화 계승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 정부는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를 포함하여 다른 문화재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 3.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개발

1960년대는 문화재와 관련된 제도가 법률로서 체계화 되면서 문화의 보호와 진흥에 관련된 체제가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과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멸실 및 훼손 우

18) 앞의 책, pp.116-120.

19) 조선일보 기사(1962. 8. 28.), 무형문화재 육성의 향연, 『조선일보』, 제4면.

려가 있던 문화재를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었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할 수 있는 진흥법이 제도화 되었다. 1962년에서 1979년까지 제 3공화국인 박정희 정부는 조국의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역사적 과업을 설정하고<sup>20)</sup> 국민 대중문화 의식 함양 및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개발을 축성할 방침을 내세웠다. 이에 1962년 ‘문화재보호법’과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및 경제의 고도성장을 위한 경제 개발 5개년을 계획하고 시정하면서 1974년에 ‘제1차 문예진흥 5개년 계획’을 제정하였다. ‘제1차 문예진흥 5개년계획’은 주체적인 민족문화 창달을 핵심골자로 입안되었다.<sup>21)</sup> 문화중흥을 기조로 하는 계획은 크게 세 가지의 목표를 두었는데, 첫 번째는 전통문화계승 및 문화유산 전승 및 개발사업, 두 번째는 예술의 활성화 및 대중화, 세 번째는 문화예술국제교류 활성화하는 것이었다.<sup>22)</sup> 박정희 정권은 자립 경제기반을 구축하면서 문화유산 발굴과 보존 및 창조활동을 통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법안과 정책으로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어 국가로부터 북한 무형의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에 대한 독립적 법의 제정과 무형의 문화적 소산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포함된 법이다. 문화재에 관한 독립적인 법의 제정인 ‘문화재보호법’은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의 주체세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가최고통치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결되었다. 1961년 12월 26일 제666회(93차) 제5대 국회 회의록인 「국가재건최고회의상임위원회회의록」을 살펴보면 ‘향교재산법안’을 비롯한 ‘문화재보호법안’이 상임위원회를 거쳐 의결되었다.<sup>23)</sup> 이 법이 제정되면서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는 지정절차를 걸쳐 문화재 보호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 4.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 최초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는 1960년대 후반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로 선별되면서 문화재 보호정책으로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는 1962년 1월 10일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고 1964년 12월 7일 국가무형문화재 제 1호로 종묘제례악이 지정되고 난 후의 일이다. 하지만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로 따로 구분하고 법적 보호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1962년 1월 20일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과 1962년 7월 16일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 제정되었지만 두 가지 법령 모두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의 계승 및 보존을 위한 제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다른 무형문화재와 동일하게 지정 절차 및 관리 보호 규정에 따라 국가적 보호체계에 안에서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의 보존이 이루어졌다.

단절 위기에 놓인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의 보존은 전승자의 재연 및 실현, 전문가의 고증 등을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로서 지정을 추진할 수 있었다. 국가무형문화재 발굴과 지정에 있어 예용해의 『인간문화재』 발간 및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의 입상은 큰 가교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1958년 개최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우리민족의 고유한 전통을 계승하려는 취지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여기에 북한에서 월남한 실향민들로 구성된 팀들이 참가를 할 수 있었다. 이에 황해도 「봉산탈춤」, 함경남도 「사자놀음」, 평안북도 「배뱅이굿」, 평안남도 「평양다리굿」 등이 경연에 참가하였다.

20) 김수정(2018), p.137.

21) 한범수(2006), 『문예중흥5개년계획』,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617&pageFlag=&sitePage=1-2-1/>, 2020. 6. 5.>.

22) 앞의 글, p.1.

23) 제5대 국회 회의록 상임위원회(1961), 1961년 회의록 제666회 93차 대한민국 국회, 『국회사무처』, pp.1-6.

경연 첫 회 수상에는 공보실장상 황해도 팀, 개인상에 함경남도 「사자춤」의 윤영춘, 마후석이, 공로상에 「봉산탈춤」의 김진옥이 포함되었다.<sup>24)</sup> 1961년 경연대회에는 황해도 「봉산탈춤」이 우승을 하면서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상을 받게 되었다.<sup>25)</sup> 1962년 경연대회에는 가면극부 우승은 황해도 「봉산탈춤», 민속놀이부 우승은 평안남도 「평양다리굿», 장려상은 함경남도 「북청사자놀이», 개인상에 함경남도 「사자놀이」의 윤영춘이 수상하게 되었다.<sup>26)</sup>

1958년도에 정부는 월남한 실향민들도 참가할 수 있는 민속예술경연대회를 주최하며 이북 팀이 수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이후 이 대회에서 수상한 종목 중 「북청사자놀이», 「봉산탈춤」은 1967년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 분단국가 이전에 한민족이라는 민족공동체의 이념이 반영되어 참가와 수상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정부정책을 살펴볼 수 있겠다. 남북이 갈등적 대립을 겪고 있었지만 민족적 숙원으로서 통일을 역사적 사명의 하나로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월남한 실향민들을 아우르고 통합하려는 것은 통일된 민족국가를 지향하던 당시 정부의 정책<sup>27)</sup>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961년 9월 박정희는 민족적 단결이야말로 이 혁명과업 완수의 첩경<sup>28)</sup>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분단국가라는 체제 속에 국가의 주권 확립과 안보가 우선이었지만, 모순적으로 통합을 지향하는 두 가지의 방향성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정책적 이념과 민족의 정통성을 이어나가고 무형문화재로 보호해야하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정부는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보호하게 된 것이다. 이는 북한지역기반 무형문화재가 남한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 살펴볼 수 있다.

## IV.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의 전승제도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는 지정주체에 따라 정부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받는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고 있으며, 시·도는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서 지정 및 보호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정주체에 따라서 보존관리가 구분되어 있지만 시·도는 ‘문화재보호법’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중심으로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다. 즉 지자체별로 시·도 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정부가 제정한 법률적 제도의 지정기준을 준용한 것으로<sup>29)</sup> 국가가 정한 커다란 큰 틀에서 지자체가 변별적 조례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 1. 지방문화재 제도 도입 및 지정주체의 이원화

1970년대는 처음으로 지방문화재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국가지정문화재 이외의 보존할 가치가

24) 조선일보 기사(1958. 8. 31.), 삼십일시상식을거행, 『조선일보』, 제2면.

25) 김희진(2017),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형성초기 역사의 재구성,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논총』 65, p.179.

26) 조선일보 기사(1962. 9. 14.), 민속예술제 성황리에 폐막, 『조선일보』, 제5면.

27) 김희진(2017), p.201.

28) 경향신문 기사(1961. 9. 15.), 혁명과업 완수를 위한 국민의 길, 국민운동의 방향, 『경향신문』, 제2면.

29) 이재필(2018),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제도 운영의 성과와 과제, 지정 제도 및 지정 현황을 중심으로, 『국립무형유산원』 5, p.9.

[문화재보호법]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다.

있는 문화재로 인정받아 필요한 문화재 중 지방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었다. 1970년 8월 10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제5장의2 지방문화재 제도가 추가되면서 제54조의2,3,4,5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제도로 1971년 8월 26일에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해녀노래」가 지정될 수 있었으며, 1972년 이후부터는 시·도 별로 지정건수가 증가하게 되었다.<sup>30)</sup> 이에 서울특별시, 부산시장 또는 각 도지사의 문화재 지정권한 부여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지방문화재의 지정 및 보호관리가 시작되었다. 이후 지방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국가문화재와 구분되어 시·도 문화재로서 보호가 이루어졌다. 이에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도 국가지정 뿐만 아니라 시·도 지정 문화재로 전승과 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1982년 12월 31일 ‘문화재보호법’이 전부 개정이 되었는데, 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구분하였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인정된 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지정 앞에 해당 시·도 명칭을 표시하게 하며 지정주체에 따라 문화재 보호정책 및 관리가 이원화 되는 구조인 것이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공보부장관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및 해제를 하게 되며, 시·도지정문화재는 시·도 자체적 지정과 문화공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sup>31)</sup> 시·도지정문화재는 지정절차, 보호, 육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관리되지만 반드시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었다.<sup>32)</sup> 즉 지정주체에 따라 관리 및 운영방식이 다르지만 국가가 정한 법률적 제도 안에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 있던 것이다.

시·도지정문화재로 인정된 첫 번째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는 1988년 12월 24일에 지정된 인천광역시무형문화재 제3호 「인천근해 갯가노래 뱃노래」이다. 이 문화재를 필두로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가 시·도무형문화재로서 보존관리가 이루어졌다. 물론 이 지정도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를 따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아닌 동일한 제도 안에서 보호 및 관리가 진행된 것이다. 인천광역시는 1981년 7월 1일에 ‘인천직할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가 제정되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를 보존하게 되었다.<sup>33)</sup> 즉, 지정기준, 운영을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하면서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를 비롯한 인천광역시의 무형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 2. 보유자 인정 의무화

1970년 8월 10일 ‘문화재보호법’ 일부가 개정되었는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및 해제가 의무화되었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시 보유자를 같이 인정해야 하며 보유자가 모두 사망할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해제하는 보유자 유무의 제도 조건화가 도입되었다. 무형문화재는 사람에 의해 전승되기 때문에 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갖고 있는 보유자를 인간문화재로 지정하면서 보유자의 역할이 중요시

30) 김미경(2012), 무형문화재 정책 및 운영의 발전방안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56.

31) 문화공보부에서 문화부로, 1993년에 문화체육부로 바뀌면서 [문화재보호법]은 1989년 12월 30일, 1993년 3월 6일에 법이 개정되었다.

32) 1982년 12월 31일 [문화재보호법]을 살펴보면,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공사착수 및 완료, 소재지 및 보관 장소 변경, 벌살·도난·훼손 시,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3) 인천광역시청(2020),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new.jsp?regionId=28000#none/](http://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new.jsp?regionId=28000#none/), 2020. 9. 21.>.

된다는 의미로<sup>34)</sup> 해석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지정되었지만 구체적인 사안과 체계적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도 수립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1971년 8월 3일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를 살펴보면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인 「강령탈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기능보유자로서 오인관이 같이 지정받았는데, 1971년 7월 19일 별세한 것이다.<sup>35)</sup> 이에 보존, 전승에 대한 위기감을 바탕으로 문화계는 시급한 대책마련을 위한 주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전승사업 5개년 계획을 통해 기능보유자 60세 이상의 기능보유자에게는 매월 7천원, 59세 이하 기능보유자에게는 연 2만원씩 보조비 지원, 국립병원 무료 치료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지만 효과적인 대책은 아니었다. 이에 문화계는 전수회관 전국적 마련, 정기적 전시, 보조비 대폭인상, 과학적 전수방안 마련 등 대책을 내놓았다.

1976년 10월 16일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를 살펴보면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속의 재현을 위한 전통민속예술제, 민속예술경연대회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경거리, 놀이, 쇼로 원형이 변형이 되어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sup>36)</sup>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간문화재가 98명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생활고, 병고에 힘들어서 세상을 떠났고, 이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장사훈은 원형유지, 정기적 검사, 서울에 공동종합전수회관 설립, 국가보조금 인상 등 실시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의 문제점 발견과 지적은 고령화로 인해 계승의 맥이 끊어지지 않기 위한 인간문화재 지정 및 바람직한 후계자 양성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켜주었다. 특히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고령화가 많고 전승자가 적었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였다. 즉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은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체제였지만 현실에 맞는 재정적 지원 및 전수방안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계승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 3. 전승실태조사 및 전수교육 실시

문화재관리국은 1981년 무형문화재 전승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및 보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1981년 12월 9일에 실린 조선일보 기사를 살펴보면, 문화재관리국이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를 통해 전국 지정문화재의 전승종목, 전승단체, 기·예능보유자, 이수자, 전수생 등을 파악하는 조사였다.<sup>37)</sup> 전승실태조사에서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는 한국가면연구회의 「봉산탈춤」, 함남 북청민속예술보존협회의 「북청사자놀이」, 해서가면극보존협회의 「강령탈춤」이 단체에 의해 전승되고 있었다. 무형문화재의 전승은 단체의 공연활동 뿐만 아니라 학교의 특별활동시간에 반영되어 전수교육이 진행되었다.<sup>38)</sup>

1982년 12월 31일 첫 번째로 전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국가무형문화재 보호·육성을 위한 보유자 전수교육 실시를 제도화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통한 전승으로 무형문화재의 특징 중 하나인 보유자의 기·예능 자체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며 사람을 통한 기·예능의 교육전승이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부분으로 보완 되었다. 또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조항

34) 김미경(2012), p.56.

35) 조선일보 기사(1971. 8. 3.), 무형문화재, 『조선일보』, 제5면.

36) 조선일보 기사(1976. 10. 16.), 문화의 달에 보내는 공개상 한국문화 이대로 좋은가(9) 민속의 전승, 『조선일보』, 제5면.

37) 조선일보 기사(1981. 12. 9.),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초중고서 관심 높아져, 『조선일보』, 제7면.

38) 문화재청(2011), 문화재청, p.239.

이 신설되면서 전수관 설립, 전수교육 등 체계적 국가무형문화재 보호와 육성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에 1982년 은율탈춤보존회는 문화공보부 문화재 관리국이 전승지를 인천으로 지정하여 1983년 은율탈춤전수관 착공을 통해 1984년 4월 4일에 전수관으로 입주하면서 전승 활동을 이어나갔다.<sup>39)</sup>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인 「은율탈춤」은 정부로부터 관리되는 무형문화재이지만 전승지를 인천으로 지정하면서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의 전수관 관리 및 운영을 하게 되었다. 인천광역시는 1985년 11월 20일에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4차례 개정한 후 2015년 12월 28일에 일부 개정된 사항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를 통하여 인천광역시는 국가지정무형문화재인 은율탈춤의 전승과 보존을 위한 전수관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다.

1983년 3월에는 무형문화재의 보급을 위한 교육의 장과 이수자·전수자의 공연, 강습회 등의 전통예술의 저변확대의 기여를 위해 무형문화재예술단이 창설되었다.<sup>40)</sup> 무형문화재예술단은 봉산탈춤보존회,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 해서가면극보존회, 선소리타령연구보존회, 은율탈춤보존회, 송파산대놀이보존회, 대악회, 판소리보존연구회 등 9개 단체가 소속되었다. 하지만 1990년 1월 7일에 실린 조선일보 기사를 살펴보면 무형문화재 활동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전수회관이 낡고 비좁아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sup>41)</sup> 무형문화재예술단 단장인 김천흥은 쓸 만한 상설공연장의 필요성 요구, 「봉산탈춤」의 김기수는 쾌적한 공연장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하였다. 한국 전통공연의 저변확보를 위한 장소가 낡고 포화상태여서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여건 조성을 반영하여 1997년 11월 29일에 서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 개관하였다. 정부는 1백 55억원을 들여 착공하였고 상설공연장, 예능연습실, 전시실, 판매장 등 여러 시설들이 갖추게 되었다. 이 전수회관에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인 「봉산탈춤」, 「북청사자놀음」, 「강령탈춤」과 「남사당놀이」, 「선소리타령」 등 단체종목이 입주하면서 전승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전수교육과 전승활동으로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의 전수조교, 이수자를 선정하면서 계승의 맥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문화재청에서 통계한 2021년 3월 3일 기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현황’을 살펴보면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는 서울과 인천광역시에 있는 전수관에 입주하여 전승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sup>42)</sup> 국가무형문화재인 「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 「강령탈춤」은 서울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 「은율탈춤」은 인천 은율탈춤전수관에,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 「황해도평산소놀이굿」은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 입주하여 전수교육을 이어나가고 있다. 시·도무형문화재인 「인천근해갯가노래뱃노래」, 「꽃맞이굿」, 「지화장」은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 입주하여 전수교육을 이어나가고 있다.

#### 4. 국가, 시·도 무형문화재의 전승지원금

국가무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는 보유자, 보유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금이 다르게 지급된다. 국가무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에서 계획한 ‘2021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을 살펴보면 보유자

39) 은율탈춤보존회(2020), <<http://www.eunyul.com/sub.php?idx=129/>, 2020. 7. 8.>.

40) 조선일보 기사(1990. 1. 7.), 무형문화재 활동무대가 없다, 『조선일보』, 제11면.

41) 조선일보 기사(1997. 11. 25.), 서울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완공, 『조선일보』, 제27면.

42) 문화재청(2021),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현황』,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78852&bbsId=BBSMSTR\\_1045&mn=NS\\_03\\_09\\_01/](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78852&bbsId=BBSMSTR_1045&mn=NS_03_09_01/), 2021. 3. 3.>, pp.1-9.

에게는 월 1,500,000원, 전승교육사에게는 월 700,000원, 보유단체는 월 3,600,000원, 보유자가 없는 보유단체는 월 5,500,000원이 지급된다. 명예보유자에게는 월 1,000,000원이 지급되며, 보유자에게 입원위로금 연1회 500,000원과 장례위로금 1,200,000원이 지급된다.<sup>43)</sup>

인천광역시에서 계획한 ‘2021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원 계획’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의 보유자 경우는 월 1,100,000원 보유단체는 전수교육관 입주단체 월 400,000원, 전수교육관 미입주 단체는 월 500,000원, 전수교육조교는 550,000원이 지급된다. 명예보유자는 월 880,000원이 지급되며, 보유자에게는 입원위로금 연 1회 500,000원과 장례보조금 1,000,000원이 지급된다.<sup>44)</sup>

위 통계 자료를 통해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시도무형문화재 지정의 지원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sup>45)</sup>

〈표 4〉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정번호 및 명칭	전승자	전승지원금
제15호 북청사자놀이	(사)국가무형문화재 북청사자놀이보존회	보유단체 - 월 5,500,000
	동선분의 3명	전승교육사 - 월 700,000
제17호 봉산탈춤	(사)국가무형문화재 봉산탈춤보존회	보유단체 - 월 3,600,000
	김애선	보유자 - 월 1,500,000
	장용일의 5명	전승교육사 - 월 700,000
제29호 서도소리	김광숙외 2명	보유자 - 월 1,500,000
	유지숙외 2명	전승교육사 - 월 700,000
제34호 강령탈춤	(사)국가무형문화재 강령탈춤보존회	보유단체 - 월 3,600,000
	김정순외 1명	보유자 - 월 1,500,000
	김정숙외 4명	전승교육사 - 월 700,000
제61호 은율탈춤	(사)국가무형문화재 은율탈춤보존회	보유단체 - 월 3,600,000
	박일홍외 1명	보유자 - 월 1,500,000
	조용희외 3명	전승교육사 - 월 700,000
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사)국가무형문화재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	보유단체 - 월 5,500,000
	김금진	명예보유자 - 월 1,000,000
	조성연외 2명	전승교육사 - 월 700,000
제86-1호 문배주	이기춘	보유자 - 월 1,500,000
	이승용	전승교육사 - 월 700,000
제90호 황해도평산소놀이굿	(사)국가무형문화재 황해도평산소놀이굿보존회	보유단체 - 월 5,500,000
	안금순외1명	명예보유자 - 월 1,000,000
	이상희	전승교육사 - 월 700,000

43) 문화재청(2021), 『2021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 <[https://www.cha.go.kr/multiBbz/selectMultiBbzView.do?id=19570&no=26230&bbzId=newpublic&mn=NS\\_01\\_01/](https://www.cha.go.kr/multiBbz/selectMultiBbzView.do?id=19570&no=26230&bbzId=newpublic&mn=NS_01_01/), 2021. 1. 19.>, p.1.

44) 인천광역시(2021), 『2021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원 계획』, <<https://www.open.go.kr/othicInfo/infoList/infoListDetI2.do?prdnDt=20210113145248&prdnNstRgstNo=DCTDEF4FDC2F8F89EB36EC9966D6B157270/>, 2021. 1. 13.>, pp.1-12.

45) 문화재청에서 통계한 2021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과 2021년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원 계획 현황을 참고하여 북한지역기반 무형문화재의 전승지원금을 정리했다.

〈표 5〉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사·도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정번호 및 명칭	전승자	전승지원금
인천광역시무형문화재 제3호 인천근해갯가노래뱃노래	인천근해갯가노래뱃노래보존회	보유단체 - 월 400,000
	김병기외 1명	보유자 - 월 1,100,000
	유갑춘외 3명	전수교육조교 - 월 550,000
인천광역시무형문화재 제24호 꽃맞이굿	꽃맞이굿보존회	보유단체 - 월 400,000
	김매물	보유자 - 월 1,100,000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5호 지화장	김은옥	보유자 - 월 1,100,000

위에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국가 및 시·도로부터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는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의 전승지원금은 보유단체, 보유자, 전수교육사 및 전수교육조교가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 보유자의 경우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는 인천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다 40만원 차이가 나며 전승교육사 및 전수교육조교는 15만원 차이가 난다. 무형문화재의 가치는 국가 및 시·도를 구분하여 높고 낮음을 비교할 수 없지만, 보존하고 전승하는 지원금의 경우는 차등이 있어 계승에 대한 실질적 지원금 지원에 아쉬움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 5. 무형문화재의 독립적 제도에서의 전승체제

2015년 3월 27일에는 무형문화재의 독립적인 제도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국가 및 시·도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준용하여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고 전승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6년 5월 19일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를 제정하면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는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 있다.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는 지정, 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인정기준, 운영 등을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제3장제8조 5항을 살펴보면 보유자인정기준에 인천광역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46)</sup> 하지만 「꽃맞이굿」과 「지화장」의 경우는 보유자가 1명이면서 이수자도 1명인 상황이라 계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전승환경에 필요한 맞춤 제도와 효율적 무형문화재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화장」의 경우는 인천광역시에서 재료비의 지원금으로 30만원씩 지원을 받지만, 재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다. 비용도 많이 들고 만드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 「지화장」은 가족이 아닌 이상 전승을 권유할 수도 없어서 전통의 맥을 이어나갈 전승자가 없는 것이다. 또한 유형문화재와 달리 인간문화재에 대한 대우가 제도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전승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sup>47)</sup>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의 전승체제를 살펴보면, 보유자를 통하여 전수교육이 이루어지지만 지원금도 적고 제도가 미흡한 부분이 많아 전승자가 부족한 종목에는 계승에 대한 보존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다.

46) 2016년 5월 19일 제정 및 시행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조례]에 제3장제8조를 살펴보면, 시장이 정한 인정 기준의 세부지표에 따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정하며 보유자는 인천광역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7) 지화장 보유자인 김은옥선생님과 전화인터뷰(2021. 2. 7.).

## V. 이북 5도 무형문화재의 독립제도

1998년 5월 1일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에 대한 독립적인 행정규칙인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sup>48)</sup>의 제도가 신설되었다. 1962년 1월 ‘문화재보호법’, 1962년 1월 20일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36년 만이다. 그동안 다른 무형문화재와 마찬가지로 국가무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와 같은 법령과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동일한 제도와 정책안에서 보호와 계승이 이루어졌었는데 위의 제도는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를 위한 최초의 독립적인 제도인 것이다. 1962년 7월 16일 ‘이북5도위원회 규정’ 각령 제 878호로 제정되고 이북5도 위원회는 1998년 5월 1일에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을 제정하였다. 이북5도 위원회는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에 근거한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를 보호 및 관리하는 제도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 제도로 1998년 11월 2일에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돈돌날이가 함경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다. ‘이북5도 문화재 보호 규정’은 이북5도의 문화가 파생된 지역적 한계를 고려한 규정으로 보존과 전승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제도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1998년 ‘돈돌날이’가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난 후 더 이상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

### 1. 문화재보호법 새로운 조항 신설

시·도 지정 문화재는 17개의 시·도의 문화재로 관할 구역의 자체적 관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북5도 무형문화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이북5도 무형문화재는 지역 특성상의 이유로 시·도자치단체로 운영할 수 없기에 행정안전부 관리체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보존활동에 관한 열악한 지원금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이북5도 문화재 관계자를 비롯한 국회의원 몇 명이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호를 위한 보호대책 방안 토론회 및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문화재보호법’,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등이 개정 개정되고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었다.

2005년 1월 27일 ‘문화재보호법’은 제55조 시·도 문화재의 지정 조항에 6항이 새로 신설 되었는데, 이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임명된 도지사 또는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장하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권고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이북5도 무형문화재가 시·도 자치단체로 부터 보존활동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보았지만 집단적 정체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실천을 유보하였다.<sup>49)</sup> 이러한 이유로 시·도 지정 권고는 시행되지 않았고 이북5도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소액으로 이루어져 이를 계승하고 보존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겪고 있었다. 어려움이 지속되자 이북5도 무형문화재 관계자들은 문화재청장에게 2011년 2월 24일 공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2012년 11월 7일 법률안 발의를 비롯하여 2013년 3월 11일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호와 전승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48)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제정1998. 5. 1, 개정2002. 6. 5, 개정2005. 11. 8, 개정2008. 3. 18, 개정2009. 5. 4, 개정2012. 8. 16, 개정2014. 6. 3, 개정2015. 10. 2, 개정2015. 12. 22, 개정2016. 6. 9, 개정2017. 4. 6, 개정2018. 4. 18, 개정2018. 9. 11.

49) 김민기, 윤관석, 임수경(2016), 『이북5도 무형문화재 여성문화재 전승과 보호 대책 토론회』(서울: 임수경의원실), p.21.

2012년 11월 7일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 조해진 의원을 비롯한 10인이 법률안 발의를 하였다. 이 법률안은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북5도 무형문화유산 중에서 중요한 것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국가무형문화유산이나 시·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이북5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2013년 3월 11일은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호와 전승방안 토론회’<sup>50)</sup>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 및 이북5도위원회 문화재위원,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발제는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호와 전승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이북5도 무형문화재가 다른 시·도지정의 무형문화재와 달리 법률적 제도 기반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에 발제자 하응백은 전승지원금 지급, 공연무대의 활성화,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등의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보호와 전승 방안 대책을 발의하였다. 즉,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보호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관리체계

2005년 1월 27일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제55조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항목에 제6항으로 북한 지역 무형문화재를 명명하고 이북5도 도지사, 이북5도 위원회 위원장이 지역관할 하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권할 수 있는 정도였다. 반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제32조 시·도무형문화재 지정사항에 포함된 것이 아닌 제36조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서 별도의 사항을 분리시켰다. 2,3항을 통해 시·도 지역의 지정 권고 뿐만 아니라 국가무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를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인정제도를 추가하였다. 국가 법령의 제도 안에서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지정 체계를 확립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축된 것이다.

법률안 제정과 같은 해인 2015년 11월 4일 행정자치부 이북5도 위원회는 ‘이북5도 전통민속 복원·계승을 위한 포럼’을 이북5도청 중강당에서 개최하였다.<sup>51)</sup> 법안이 제정되었지만 시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확연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으며 지리적 단절과 전승 위기에 놓아진 무형문화재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북5도지사, 이북5도문화재위원, 국내·외 이북 전통 민속 전문가 5명이 연구주제를 발표하였다. 또한 2016년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서도소리진흥회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민기, 윤관석, 임수경 주최로 ‘이북5도 무형문화재 여성문화재 전승과 보호대책 토론회’가 열렸다.<sup>52)</sup> 위 두개의 포럼을 살펴보면 북한지역기반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진흥 지원금과 전승관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북5도위원회 전문 인력 파견 및 행정자치부에 전승지원금을 위한 예산확보 등 보호, 관리, 육성 등에 대한 보완 계획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50) 임수경(2013),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호와 전승방안 토론회』, < <https://dl.nanet.go.kr/>, 2019. 10. 27. >, pp.3-51.  
 51) 이북5도위원회(2015), 『별실 위기의 이북5도 전통민속 보존·계승위해 머리 맞댄다 이북5도 전통민속 복원·계승을 위한 포럼 개최』,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47510/](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47510/), 2019. 10. 27. >.  
 52) 오도민신문(2016. 5. 30.), 『이북5도 무형문화재 여성보유자 전승과 보호대책』, < [http://5donews.co.kr/board\\_other/1962/](http://5donews.co.kr/board_other/1962/), 2019. 10. 27. >.

### 3.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지속적인 보호대책 토론회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발의되면서 2018년 9월 11일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제도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진흥과 보전을 전담하는 규정인 것이다.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현황과 특성에 맞는 보호, 관리, 육성 등 이북5도 무형문화재만의 별도의 규정이 제정된 것이다. 이 규정으로 이북5도 무형문화재를 보호하는 제도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전승 지원 지급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이북5도 무형문화재는 여전히 행정안전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에 전승활동의 지원과 제도적 육성에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북5도 위원회는 이러한 개선방향을 구축하기 위해 2020년 ‘이북5도위원회 업무 추진계획’<sup>53)</sup>을 세웠는데, 이는 적극적 문화재 발굴과 남북문화교류 콘텐츠 발굴, 학술발표회, 정기공연, 도민행사 참가 등 지원방식 다양화,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확대에 관한 내용이다. 또한 이북5도 위원회는 2021년 2월 18일에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이 개정에는 전승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명칭 변경 및 전승교육사 중 명예보유자로 인정기준을 두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전승활동의 지원과 전승제도에 관한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 개정변화에 아쉬움이 있다. 여전히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전승활동 및 전승교육에 있어 합리적 방향과 효과성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북5도 문화재를 다른 문화재와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아 지원과 혜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전통문화 지원 사업에 지원 자격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전승교육사의 지원금을 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sup>54)</sup> 이에 행정안전부의 예산안 분배가 아닌 이북5도 무형문화재를 위한 독립적인 국가 정책지원과 규정이 발판이 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V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의 제도변천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제도 수립과 시행된 부분을 파악하였으며, 제도의 변화가 상황에 맞게 대처가 이루어졌는지에 고찰 할 수 있었다. 이에 실질적 제도 분석을 통한 연구제기에 해당되는 결론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1960년대 시대적 상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무형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를 포함한 모든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960년대 이전은 정부나 지역에서 북한지역기반 무형문화재 및 인간문화재도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 정부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으로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 발굴과 지정에 있어 예용해의 『인

53) 이북5도 위원회(2020), 『2020년 이북5도위원회 업무추진계획, 이북도민과 함께하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 <[https://www.ibuk5do.go.kr/5do/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90&ntId=5112/](https://www.ibuk5do.go.kr/5do/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90&ntId=5112/), 2020. 9. 20.>.

54) 평양김무 보유자인 임영순선생님과 전화인터뷰(2021. 2. 28.).

간문화재』 발간 및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의 입상은 큰 가교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1958년 개최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북한에서 월남한 실향민들로 구성된 팀들이 참가하며 수상을 하게 되었다. 이는 분단국가라는 체제 속에 국가의 주권 확립과 안보가 우선이었지만, 모순적으로 통합을 지향하는 두 가지의 방향성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정책적 이념과 민족의 정통성을 이어나가고 무형문화재로 보호해야하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정부는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보호하게 된 것이다.

1982년 12월 31일 ‘문화재보호법’ 전부 개정되면서 지정문화재가 국가, 시·도로 이원화되는 구조로 변화했고 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문화재보호법’에 준용하여 시·도의 자치적 조례에 의해 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관리가 이루어졌고, 이에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는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이 이루어졌다. 인천광역시는 지정기준, 운영을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하면서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를 비롯한 인천광역시의 무형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 시·도, 이북5도 모두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조교 또는 전승교육사로 전승체계가 동일하지만 각 지정주체에 따라 전승지원금은 다르게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유형문화재와 달리 인간문화재에 대한 대우가 제도적으로 미흡하고 지원금도 많지 않아 전승자가 부족한 종목에는 계승에 대한 보존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자치단체의 무형문화재 지정과 보존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1990년대는 반대로 국가무형문화재의 신규지정이 감소되는 시기였다. 이에 1988년 8월 1일 「황해도평산소놀이굿」이 북한문화유산의 마지막 국가무형문화재로서 지정되고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가 더 이상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지정은 정부의 체계적 지원 방안과 전승 및 보존을 위한 지원 확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시·도,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서 현실적이고 구체적 방안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법의 테두리 안에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만큼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무형문화재로서 동일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효과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내에서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들이 부족하여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의 문제점은 여전히 있었다. 실향민들은 문화재를 보존하려는 노력은 있었으나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제도적 방안이 제대로 이루어지긴 어려웠다. 이에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를 계승하려는 보유자의 병세, 고령화,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계승의 맥이 끊어질 위기는 계속 되었다.

1998년 5월 1일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인 북한지역 무형문화재의 독립적인 제도가 신설되었다. 1998년 11월 2일 「돈돌놀이」가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처음 지정되면서 이북5도 무형문화재만의 독립적인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만으로는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의 보호와 육성이 제대로 실현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98년 이후 이북5도 무형문화재를 따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것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독립적 제정이었지만, 행정안전부의 예산안 분배로 열악한 지원금, 전문적 운영미흡, 전승활동 지원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때문에 독립적 제정이 좋은 효과만을 보고 있다고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이북5도 위원회는 2021년 2월 18일에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구체적인 전승활동의 지원과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존에 관한 제도 신설과 개정에 있어서 현실

적 상황에 맞게 제도 법안과 규정을 상고해야하는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를 보호하는 제도에 있어 실질적이며 체계적 제도 집행 및 시행 방안을 제안하려한다.

첫째,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 제도의 신설 및 개정은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발각하여 본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상고해야 한다. 정기적 보유자의 면담 및 소속 단체 인터뷰 등을 통해 개선 방향성을 직접 파악하여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무형문화재 계승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서 제도적 특성에 맞는 독립기반의 발판은 마련되었지만 보존 및 계승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지원에 필요한 제도정책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필수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무형문화재, 시·도 무형문화재,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나뉘서 진행되는 지원 정책이 아닌 북한 무형유산에 맞는 전승지원금 지급 및 보호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열악하고 지원이 필요한 종목과 소멸위기에 놓아진 종목에 대한 개별적 지원금과 개별 제도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가 멸실과 훼손 우려가 있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전승활동에 관한 체계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 공연 활동, 전시회 등 기존의 전수 방식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대중매체 및 유튜브(YouTube)를 활용한 무형문화재 프로그램 개발과 공익광고를 통한 전통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언택트(Untact)시대에 맞는 비대면 교육, 공연, 전시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에 맞는 체제와 재정 지원의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규율로 체계화 시켜야 한다.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한 구체적 사안으로 제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여전히 전수관 건립 및 전승지원금을 위한 예산확보와 국가의 전통문화 지원 사업에 지원 자격 부여 등의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의 예산안 분배가 아닌 이북5도 무형문화재를 위한 독립적인 국가 정책지원과 규정이 발판이 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제안을 꾸준히 발의하여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를 국가 관리 체제로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998년 「돈돌날이」가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는 더 이상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박광무(2013). 『한국문화정책론: 21세기 최강대국의 가장 강력한 아이콘』. 파주: 김영사.
- 박혜자(2011). 『문화정책과 행정』. 서울: 대영문화사.
- 예용해(2011). 『예용해전집1』. 서울: 대원사.
- 김미경(2012). 무형문화재 정책 및 운영의 발전방안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수정(2018). 문화사회학적 시각으로 바라본 한국 문화정책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희진(2017).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형성초기 역사의 재구성.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민족 문화논총』, 65: 169-204.
- 서문현(2017).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무용부문 운영 현황에 따른 발전 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양영은(2016). 문화예술정책과 국립발레단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변화하는 국가정체성. 『무용예술학 연구』, 60(3): 87-107.
- 양종승, 한덕택(2015). 문화재보호법과 이북5도 무형문화재. 『한국전통공연예술학회』, 4: 71-119.
- 이장렬(2005). 한국무형문화재정책연구: 중요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재필(2018).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제도 운영의 성과와 과제: 지정 제도 및 지정 현황을 중심으로. 『국립무형유산원』, 5: 7-24.
- 정수진(2003). 한국 무형문화재 제도의 성립: 그 사회적 조건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갯가노래 사무장겸 이수자인 김미나선생님과 전화인터뷰. 2021. 2. 7.
- 경향신문 기사(1961. 9. 15.). 혁명과업 완수를 위한 국민의 길, 국민운동의 방향. 『경향신문』, 제2면.
- 김민기, 윤관석, 임수경(2016). 『이북5도 무형문화재 여성문화재 전승과 보호 대책 토론회』. 서울: 임수경의원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위원회(2013). 『제6차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문화재청.
- 문화재청(2021). 『국가무형문화재 현황』.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78921&bbsId=BBSMSTR\\_1045&mn=NS\\_03\\_09\\_01/](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78921&bbsId=BBSMSTR_1045&mn=NS_03_09_01/), 2021. 3. 12.>.
- \_\_\_\_\_ (2021).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현황』.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78852&bbsId=BBSMSTR\\_1045&mn=NS\\_03\\_09\\_01/](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78852&bbsId=BBSMSTR_1045&mn=NS_03_09_01/), 2021. 3. 3.>.
- \_\_\_\_\_ (2011). 『문화재청 50년사 본사(本史)』. 문화재청.
- \_\_\_\_\_ (202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20』. 문화재청.
- \_\_\_\_\_ (2021). 『2021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 문화재청.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2021). 『문화유산』. <<http://www.heritage.go.kr/>, 2021. 3. 12.>.
- \_\_\_\_\_ (2021). 『우리지역문화재』.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RegionView.do?pageNo=1\\_13\\_1/](http://www.heritage.go.kr/heri/cul/culRegionView.do?pageNo=1_13_1/), 2021. 3. 12.>.
- 서도소리보존회(2020). <<https://seodosound.modoo.at/?link=ccyewxr8/>, 2020. 7. 8.>.
- 오도민신문(2016. 5. 30.). 이북5도 무형문화재 여성보유자 전승과 보호대책. <[http://5donews.co.kr/board\\_other/1962/](http://5donews.co.kr/board_other/1962/), 2019. 10. 27.>.
- 은율탈춤보존회(2020). <<http://www.eunyul.com/sub.php?idx=129/>, 2020. 7. 8.>.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 이북5도 위원회(2019). <<http://www.ibuk5do.go.kr/5do/frt/main.do/>, 2019. 10. 2.>.
- \_\_\_\_\_ (2015). 멸실 위기의 이북5도 전통민속 보존·계승위해 머리 맞댄다.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47510/](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47510/), 2019. 10. 27.>.
- \_\_\_\_\_ (2020). 2020년 이북5도위원회 업무추진계획, 이북도민과 함께하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 『행정안전부』, <[https://www.ibuk5do.go.kr/5do/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90&nttId=5112/](https://www.ibuk5do.go.kr/5do/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90&nttId=5112/), 2020. 9. 20.>.
- 이북5도 위원회 규정
- 인천광역시(2021). 『2021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원 계획』.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김윤정(2021).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3호 인천근해갯가노래뱃노래』.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청(2020).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new.jsp?regionId=28000#none/](http://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new.jsp?regionId=28000#none/), 2020. 9. 21.>.
- 인천직할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
- 임수경(2013).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호와 전승방안 토론회』. 서울: 임수경의원실.
- \_\_\_\_\_ (2014). 『이북5도무형문화재 정책자료집』. 서울: 임수경의원실.
- 정종섭, 정상우 외 5(2011).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문화재청.
- 제5대 국회 회의록 상임위원회(1961). 『1961년 회의록 제666회 93차 대한민국 국회』. 국회사무처.
- 조선일보 기사(1958. 8. 31.). 삼십일시상식을거행. 『조선일보』, 제2면.
- \_\_\_\_\_ (1962. 9. 14.). 민속예술제 성황리에 폐막. 『조선일보』, 제5면.
- \_\_\_\_\_ (1962. 8. 28.). 무형문화재 육성의 향연. 『조선일보』, 제4면.
- \_\_\_\_\_ (1971. 8. 3.). 무형문화재. 『조선일보』, 제5면.
- \_\_\_\_\_ (1976. 10. 16.). 문화의 달에 보내는 공개상 한국문화 이대로 좋은가(9) 민속의 전승. 『조선일보』, 제5면.

- \_\_\_\_\_ (1981. 12. 9.). 무형문화재 전승교육 초중고서 관심 높아져. 『조선일보』, 제7면.
- \_\_\_\_\_ (1990. 1. 7.). 무형문화재 활동무대가 없다. 『조선일보』, 제11면.
- \_\_\_\_\_ (1997. 11. 25.). 서울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완공. 『조선일보』, 제27면.
- 지화장 보유자인 김은옥선생님과 전화인터뷰. 2021. 2. 7.
- 평양검무 보유자인 임영순선생님과 전화인터뷰. 2021. 2. 28.
- 한범수(2006). 『문예중흥5개년계획』.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617&pageFlag=&sitePage=1-2-1/>, 2020. 6. 5.>.

논문투고일 2021. 02. 14.  
심사일 2021. 02. 17.  
심사완료일 2021. 02. 26.

## **An Analysis on the System of Transmission and Preserv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riginated from the North Korean Region in South Korea**

**Choi, Hee Ah**

Ph.D. completion ,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practical aspects of the system regarding the transmission and preserv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riginated from the North Korean region. The state, city, ibuk5do considered how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protects intangible cultural assets based on North Korea, and their ways of consideration has been changing through time. As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Regulation was enacted on May 1, 1998, Ibuk5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classified and an independent system was established. However, there is still a problem with insufficient support measures, because there are no actual local governments. Although the system was established, problems such as poor subsidies and lack of professional operations have arisen due to the lack of practical condi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independent policy support system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riginated from the North Korean region in North Korea.

**Keywords:** North Korea's regional bas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북한 지역기반 무형문화재), System(제도), transmission(전승), preservation(보존), Ibuk5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이북5도 무형문화재)